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대변인) 채용 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변인 업무를 담당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9월 13일

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



### 1.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채용인원	채용기간	근무예정서부	담당직무 내용
대변인	시간선택제 임기제 (가급)	1명	1년	소통 담당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구정 현안 및 주요 정책 관련 통합 메시지 기획</li><li>언론, 인플루언서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 추진</li><li>구정 해외홍보를 위한 외신 대상 맞춤형 취재 지원</li><li>구정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한 전략적 인터뷰 추진 및 언론취재 지원</li><li>언론보도사항 분석 및 평가를 통한 기획 보도 추진</li><li>보도 리스크 관리(부정, 왜곡보도 사실 확인 및 대응)</li><li>구정 역점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방송, 유튜브 및 SNS 콘텐츠 관리</li><li>그외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</li></ul>

※ 근무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며, 근무실적 우수 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### 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
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규칙

### 3. 응시 자격 요건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1) 만 18세 이상인 자로 지역, 성별 제한 없음

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2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3)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-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-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  - ※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  - 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**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** :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
구분	응시자격요건 (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건)
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	1.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경력 인정 범위 ▶ 정부 및 공공기관·언론사·방송사 등에서 대시민·언론메세지 기획·작성 업무 경력(해당 경력이 명시되어야 함)

※ 유의사항

- 1) 경력증명서 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함 (상세히 명시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)
- 2)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며,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
- 3)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에 따라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## 4.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

○ 근무조건

- 근무시간 : 주당 35시간(1일 7시간)
- 복무기준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준용

○ 보수 및 수당 : 연봉 57,178천원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- 수당은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9. 24.(화) ~ 9. 26.(목), <3일간 09:00~18:00, 중식시간 제외>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
  - ※ 대리접수 가능,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
- 접수처 : 서대문구청 소통담당관
  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(연희동) 서대문구청 5층, 우편번호: 03718
  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 - ※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
(수입증지 판매처: 서대문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, 수입증지 가격: 10,000원/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동봉 제출)
  - ※ 우편접수(등기)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
  - ※ 우편접수,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### ○ 시험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서류전형	2024.10.2.(수) 예정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4.10.4.(금) 예정	서대문구청 홈페이지
면접시험	2024.10.7.(월) 예정	추후 개별 안내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4.10.11.(금) 예정	서대문구청 홈페이지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.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 심사 (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)
- 합격자 발표 :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
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3항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. 다만, 필요한 경우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
  - ※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: 구 홈페이지 공고
  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대문구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
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## 6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(별지 1호 서식) 1부

- 응시수수료 : 10,000원 상당의 서대문구 수입증지 인증
- ※ 수입증지 판매처 : 서대문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10,000원 수입증지 인증
- ※ 응시원서 접수 당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

② 이력서(별지 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

-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- ③ 자기소개서(별지 3호 서식) 1부
- ④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4호 서식) 1부
- ⑤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별지 5호 서식) 1부
-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6호 서식) 또는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 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 -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확인용) 제출 필요)
- ⑧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(근무처별)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
  - 해당기관(회사)의 관인(법인 인장)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 - 비상근,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
  -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 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(별지 7호 서식) 추가 제출
  - 증명서 발급기관이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라며, 근무기관(회사)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
- ⑨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,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제출, 운전면허증은 제외)
  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 첨부
  - ※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
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조회,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없을 경우 포함) 또는 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([www.sdm.go.kr](http://www.sdm.go.kr)) '고시공고'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서대문구청 소통담당관 담당(김해윤 ☎ 02-330-1109)